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68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5.2.27. 국회 의결, '25.3.25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보궐위원

임명,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처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경미한 변경기준,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 및 요건, 인접지역의 정의 등 부지적합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바. 주민투표의 실시 및 통보 범위,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정의 등 부지선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해촉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및 통보 절차, 계획 내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자.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범위, 배분방법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특별회계의 세출, 지원 중단·회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카. 부지선정의 취소 통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

타. 기반조성계획의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승인·변경 절차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성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파.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및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하.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승인·변경 절차, 주민의견 수립, 공람·
공청회 개최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지원단위, 수립, 공청회 개최,
결과 제출 등 지원사업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3조
부터 제54조까지)

너. 부지내저장시설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민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더. 부지내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8조)

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

머. 수수료의 납부주체,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배분·귀속 절차 등 수수
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버.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범위, 재원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및 이행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4조)

어.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5조)

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
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준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48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novelty0909@korea.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에 용역·자문·연구 등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전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보궐위원) ① 법 제8조제1항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기관의 직원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익명으로 처리된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무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의2(관계기관의 협의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6조에 따른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법 제1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9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17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제10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내용
2. 기본계획 초안의 공람 방법 및 공람 기간
3.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위원회의 귀책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한다.

④ 위원회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자원 조달계획

② 관리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시행계획에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13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지적합성 조사 전체 일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1.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개요(기본조사의 목적, 기간, 평가기준 및 방법을 포함한다)
 2.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3.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신청 방법 및 기한(주민의견확인, 의회동의, 제15조에 따른 인접 시·군·구와의 협의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전에 제15조에 따른 기본조사 인접지역의 존재여부를 위원회에 질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인접지역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측량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본조사 인접지역) 법 제21조제3항에서 “그 기본조사 후보부지가 인접한 다른 시·군·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그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다른 시·군·구(이하 “기본조사 인접지역”이라 한다)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방안)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18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 부지”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군·구

2.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섬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

제19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8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20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제18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
장의 요청을 받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제18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설 부지가 속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가 지명하는 1인

3. 제18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설 부지가 속한 시·군·구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 법 제38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소속 임직원

5.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국무총리는 법 제24
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실무위원이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지원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
2.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3.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2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
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지원위원
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
으로 본다.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심
층조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층조사 대상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
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심층조사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은 심층조사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요청서와 제4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지원계획의 확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계획의 통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은 관리시설 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한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의 규모 및 기간
3. 지원사업별 소요재원 및 연도별 자금사용계획
4.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원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지원계획의 변경)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 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제4항중 “지원요청서”는 “지원변경요청서”로

보고, 제27조제5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며, 제29조제2항중 “지원 계획”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32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목적 및 개요
2. 세부사업계획(사업규모·사업내용·사업시행기간·사업장소·사업효과·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원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중 “확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35조(특별지원금의 규모 및 지원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의 규모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하되, 관리시설의 건설비를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관리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36조(특별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40은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시·군·구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시·군·구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배분

4.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배분

제37조(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①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는 위원장이 특별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과 협의한 후,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특별지원금을 분할 지원하기로 협의한 때에는 해당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장비의 확충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 지원
4. 그 밖에 지원위원회가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9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특별지원금 등의 회수) ① 위원회는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 동안 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관할 시·군·구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금액 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중단 사유가 계속되어 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관리사업자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연구시설 운영의 목표 및 중점 기술개발방향
2.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분석 및 대응전략
3. 주요 기술의 실현시기
4. 처분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부지선정의 취소 통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조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반조성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반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반조성 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2. 기반조성 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계획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반조성 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3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등)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이하 “관리기술”이라 한다)의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관리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3. 관리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4조(기술개발성과의 반영) 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내용 및 장기 효과
2. 해당 기술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3. 해당 기술이 경제·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국제적 동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

제45조(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자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6.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력양성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전문인력 동향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
3. 전문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의 설치목적 및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의 개요
 - 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 나. 부지내저장시설의 위치와 면적
 - 다. 부지내저장시설의 방식 및 건설기간
 - 라. 부지내저장시설의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규정준수 계획
 - 마. 부지내저장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후핵연료의 반출계획
3.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시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2. 시설계획의 변경 내용 및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시설계획

④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계획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및 변경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4.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충실성
- 제50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공람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라 함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하려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시설계획 초안(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
 2.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③ 승인신청자가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

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시설계획 초안의 주요내용

2.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승인신청자의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3.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④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은 제3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승인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 승인신청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등의 개최횟수, 일시 및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승인신청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승인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승인신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승인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등이 승인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신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생략 사유의 설명 및 설명자료 제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청회 개최) ① 승인신청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이 끝나고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2.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② 승인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승인신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승인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시설계획 승인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한다.

제53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란 읍·면·동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지원의 원칙 및 기본방향
2. 지원금의 연도별 지원규모 및 조달 계획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54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세부내용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 및 기대효과
3.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4. 전년도 지원사업의 시행결과

②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종류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법 제37조에 따라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배분하는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70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

지름 5킬로미터 이외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

②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군·구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시·군·구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시·군·구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부지내저장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배분

③ 제2항에 따라 각 시·군·구가 배분받은 지원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이외의 지역에 각각 배분한다.

제56조(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54조에 따른 연도별 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주민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로 주민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시·군·구별로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2.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3. 제5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은 “부지내저장시설”로, “관리사업자”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로,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제59조(기금의 사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준비
3. 법 제30조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43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및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평가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34조제2항 및 「원자력진흥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

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지원수수료로서 지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① 관리사업자는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법 제40조제2항 및 이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각각 별도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60조제3항에 따른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면서 귀속 처리한다.

③ 관리사업자는 분기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되는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⑤ 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한 때에는 그 내역을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안전 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지원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3조(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① 제62조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 제1호에 따른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 제6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관리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관리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5조(업무의 위탁) 법 제4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운영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술개발
3. 법 제35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 및 처분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 제66조(과태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제54조 관련)

사업구분	세부사항
1. 주민직접 지원 사업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인터넷 비용,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 직접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업
2. 주민복지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제고에 필요한 사업

(별표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대상(제62조 관련)

사업구분	세부사항
1. 전기요금 보조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한다. 나. 산정기준 및 배분기준은 사업규모, 지원대상자의 수, 처분시설과의 거리, 소득규모,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홍보사업	관리시설의 건설·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3. 육성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급식비 또는 생활비 보조를 포함한다),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체육활동 또는 방과후 활동 등의 지원, 학생참여 행사의 지원 등을 시행한다. 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4. 환경·안전 관리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처분시설 주변의 일반환경, 방사선환경 및 방사선안전을 감시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5. 농수산물 관련 지원 사업 및 관광 진흥사업	농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관광진흥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과태료 금액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0조제1항 제1호	50	100	200
2.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 제50조제1항 제2호	100	150	200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0조제1항 제3호	100	150	200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0조제1항 제4호	100	150	200

(서식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제47조 관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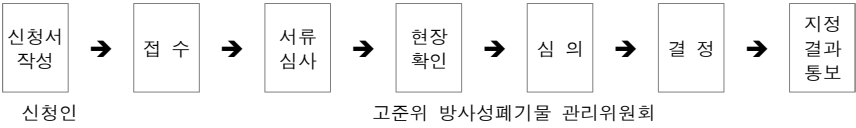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